

연예인 보도와 사생활 침해



연예인인 그녀는, 대중스타로서 많은 인기와 환호를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만큼은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고 싶어,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린 채 비밀리에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모 인터넷 신문사에서 그녀의 결혼 소식을, 본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했다.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숨기고 싶었던 결혼사실이 보도된 것 자체가 불쾌했다. 또한 그렇게도 바라왔던 조용한 결혼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화가 났다.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될 경우, 비록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언론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공적 인물, 즉 공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공인의 사생활은 공중의 정당한 알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한,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문제는 과연 누가 공인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중 몇 퍼센트 이상이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공인이라거나 또는 TV에 연간 몇 회 이상 출연하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명쾌할까. 하지만 공인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공인인지, 연예인이 공인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잣대이자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판례는 연예인이 당사자가 된 일련의 사건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인기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대중스타의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연예인의 사생활이라고 해서 모두 여과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지, 가장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은 아무리 연예인의 그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공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지만,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도의 위법성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를 모두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그녀의 결혼사실이 보도된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조정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 불성립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어쩐지 기운이 빠진 목소리다.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못내 속상한 눈치다.

어쩌면 많은 연예인들은 본인의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지 모르겠다. 그녀가 동의 없이 결혼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불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따지고 보면 연예인 또한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종의 ‘직업’일 뿐이니,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현대사회에서, 연예인은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를 통해 존재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것 또한 연예인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몫 아닐까. 어쩌면 그녀가 원했으나 포기해야 했던 “조용한 결혼식”은 그동안 누려왔던 인기와 명성에 따르는 세금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